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188 호

2017년10월11일(수)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282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7-283호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942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22
- 여수시 공고 제2017-1943호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모집 공고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55
- 여수시 공고 제2017-1948호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0
- 여수시 공고 제2017-1953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공고 /65
- 여수시 공고 제2017-1954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66
- 여수시 공고 제2017-1955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67
- 여수시 공고 제2017-1956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공고 /68

회 람									
--------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11.

여 수 시 장

1. 목 적

-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3.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시 설 명	주 소	보호구역지정구간	비고
소라면 장척마을 노인보호구역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91-4번지 일원	마을주변 도로 300m	신규
율촌면 가장문화마을 노인보호구역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2002-3번지 일원	마을주변 도로 300m	신규
화양면 장수마을 노인보호구역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55-1번지 일원	마을주변 도로 300m	신규

※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061-659-5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고시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2016. 10. 21.) 및 동시장 폐지 공고(여수시 공고 제2017-21호), 미평시장의 전통시장 인정 취소 공고(여수시 공고 제2017-1820호)에 따라 같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 10. 11.

여 수 시 장

1. 지정 목적(변경)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및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내용(변경)

- 위 치 : 덕양시장 등 14개 전통시장
- 범 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현황

번호	시 장 명	소 재 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면 적(m ²)	비 고
1	덕양시장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70-1번지 일원	3,840,695	전통시장
2	봉산시장	여수시 봉산동 274-4번지	3,414,047	"
3	쌍봉시장	여수시 학동 35-3번지	3,307,792	"
4	(주)여수수산물시장	여수시 교동 680번지	3,345,137	"
5	(주)중앙시장	여수시 교동 400-1번지 일원	3,367,753	"
6	(주)서시장	여수시 서교동 280번지	3,354,295	"
7	진남시장	여수시 학동 35-1번지	3,400,655	"
8	제일시장	여수시 학동 35-2번지	3,314,306	"
9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여수시 남산동 4번지 일원	3,556,223	"
10	서시장주변시장	여수시 서교동 534-23번지 일원	4,060,844	"
11	중앙선어시장	여수시 중앙동 385-11번지 일원	3,534,966	"
12	교동시장	여수시 교동 605-44번지 일원	4,135,380	"
13	해안로건어물상가시장	여수시 교동 481번지 일원	3,849,873	"
14	도깨비시장	여수시 학동 58-7번지 일원	3,547,089	"

※ 동시장(여수시 관문동 251-4번지 일원), 전통시장 폐지, 미평시장(여수시 오림동 397번지)
전통시장 인정 취소

3. 구역도면 : 별첨(변경)

4. 고시방법 : 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시보)

5. 전통상업 보존구역 관련 도서열람 방법(변경)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 여수시 여문2로 124(문수동, 문수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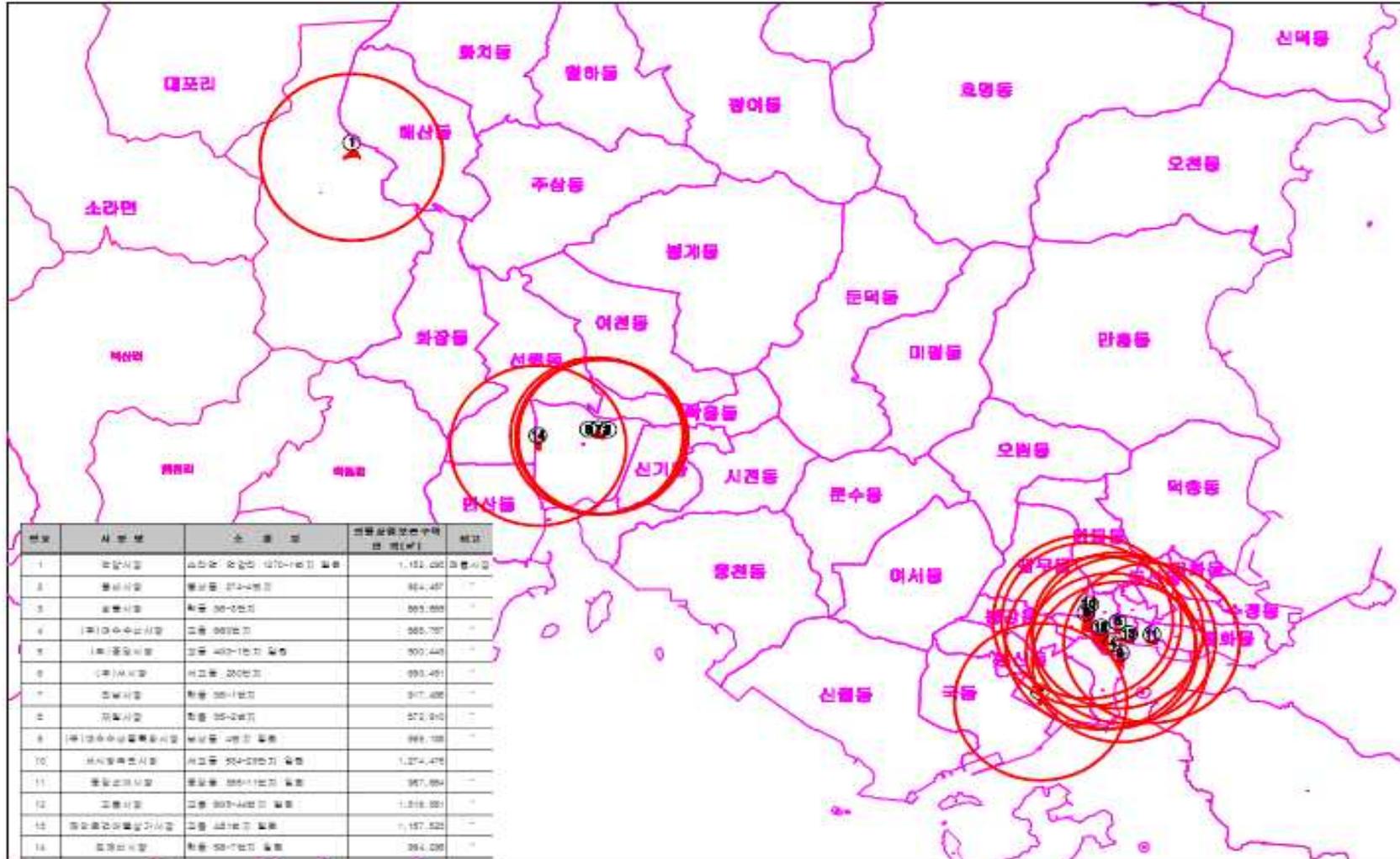
☎ 061-659-36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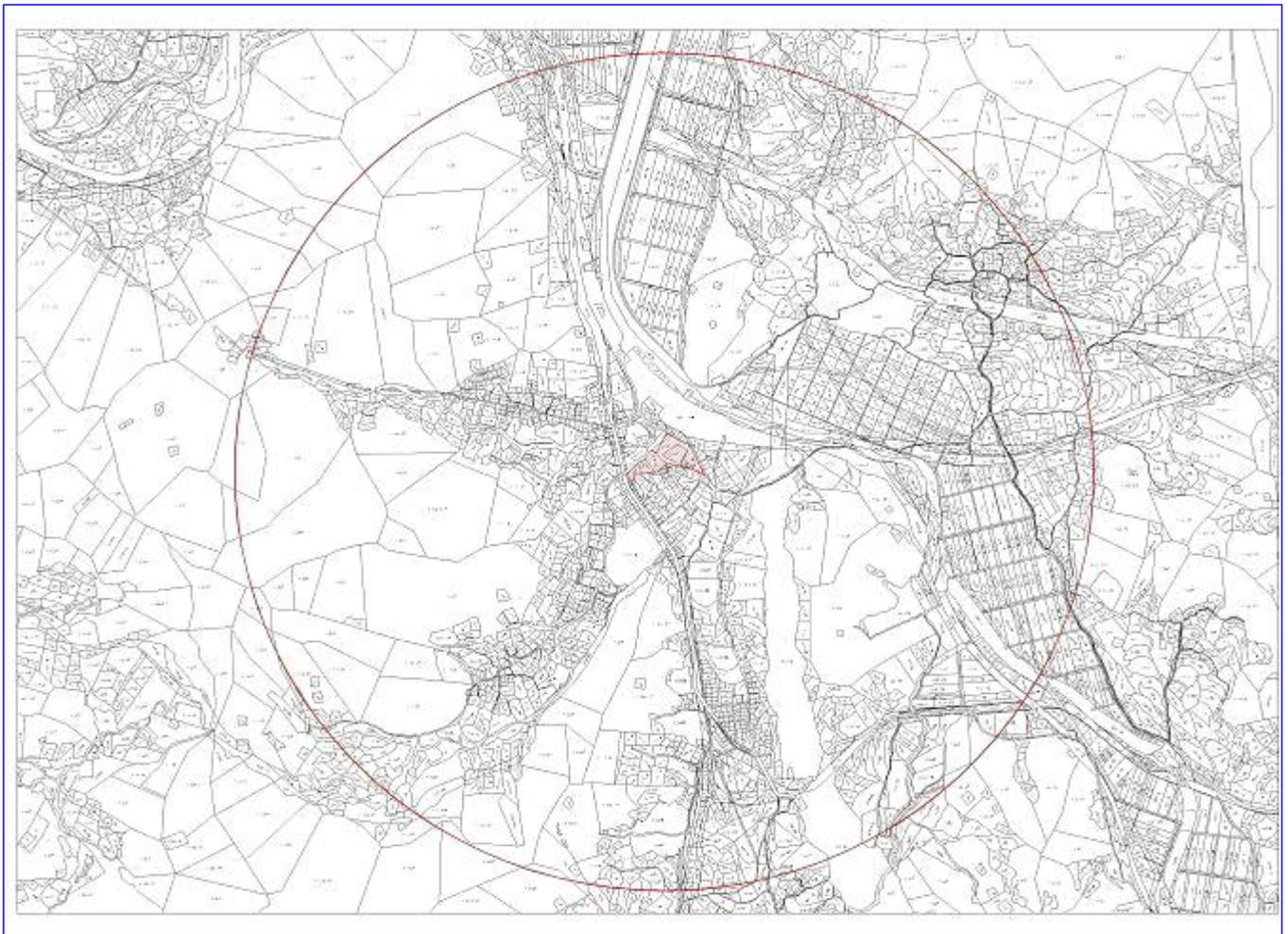
제2조(유효기간)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현황도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덕양시장
- 등록일자 : 1932. 10. 1.
- 위치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70-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840,695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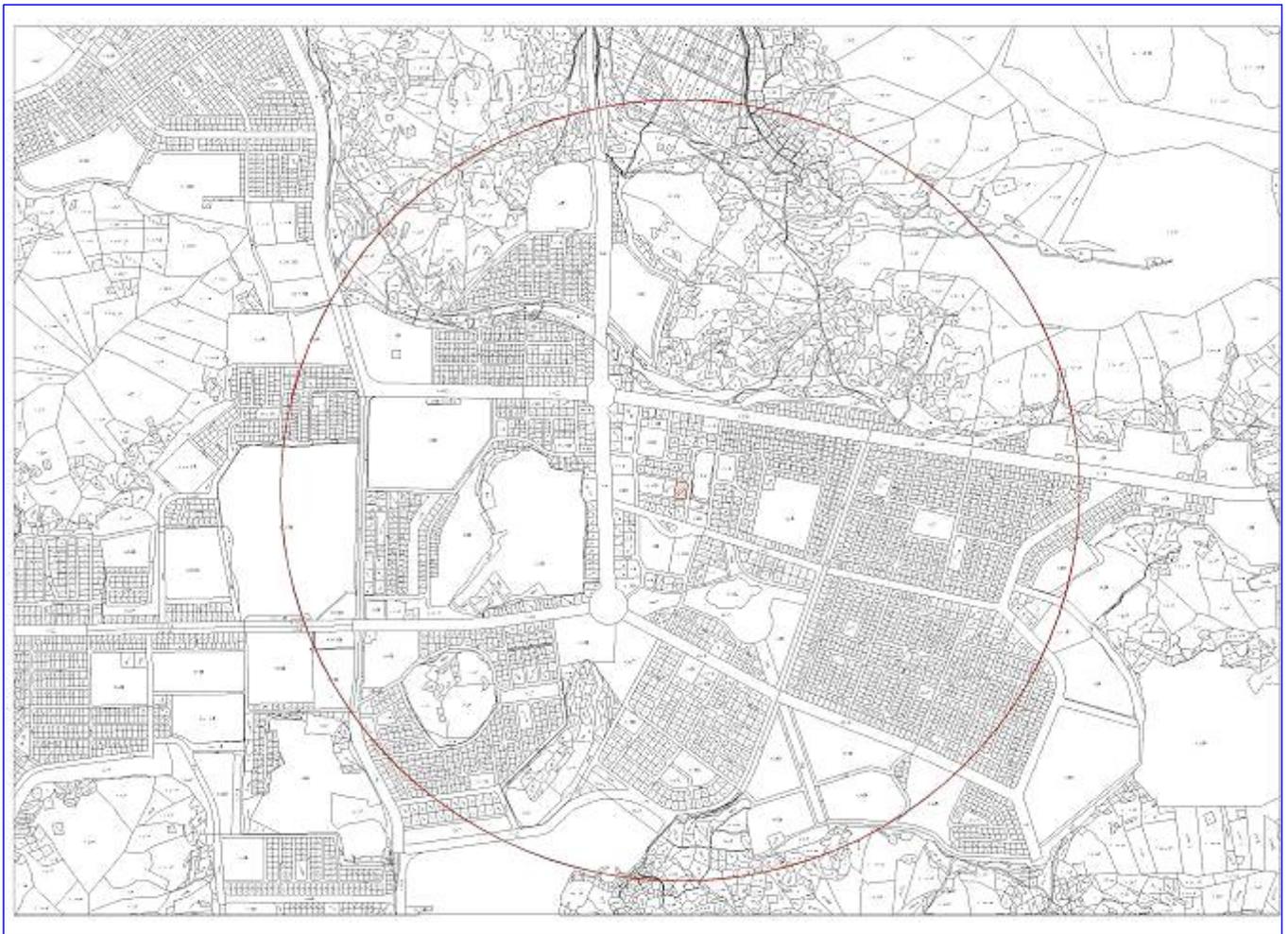
- 시장명 : 봉산시장
- 등록일자 : 1985. 7. 15.
- 위치 : 여수시 봉산동 274-4번지
- 대지면적 : 3,414,047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함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쌍봉시장
- 등록일자 : 1989. 6. 27.
- 위치 : 여수시 학동 35-3번지
- 대지면적 : 3,307,792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함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주)여수수산시장
- 등록일자 : 1969. 3. 31.
- 위치 : 여수시 교동 680번지
- 대지면적 : 3,345,137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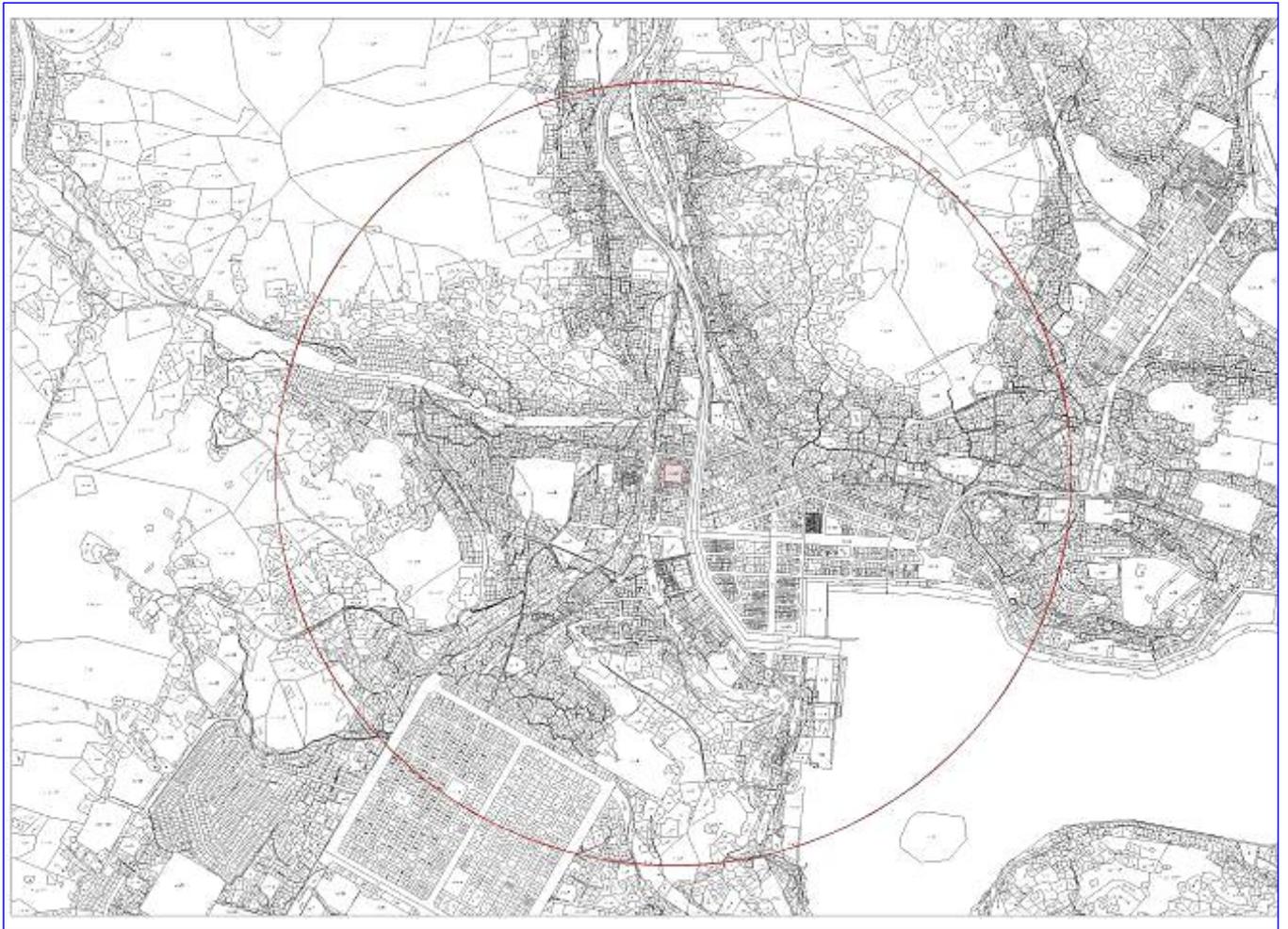
- 시장명 : (주)중앙시장
- 등록일자 : 1975. 11. 18.
- 위치 : 여수시 교동 400-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367,753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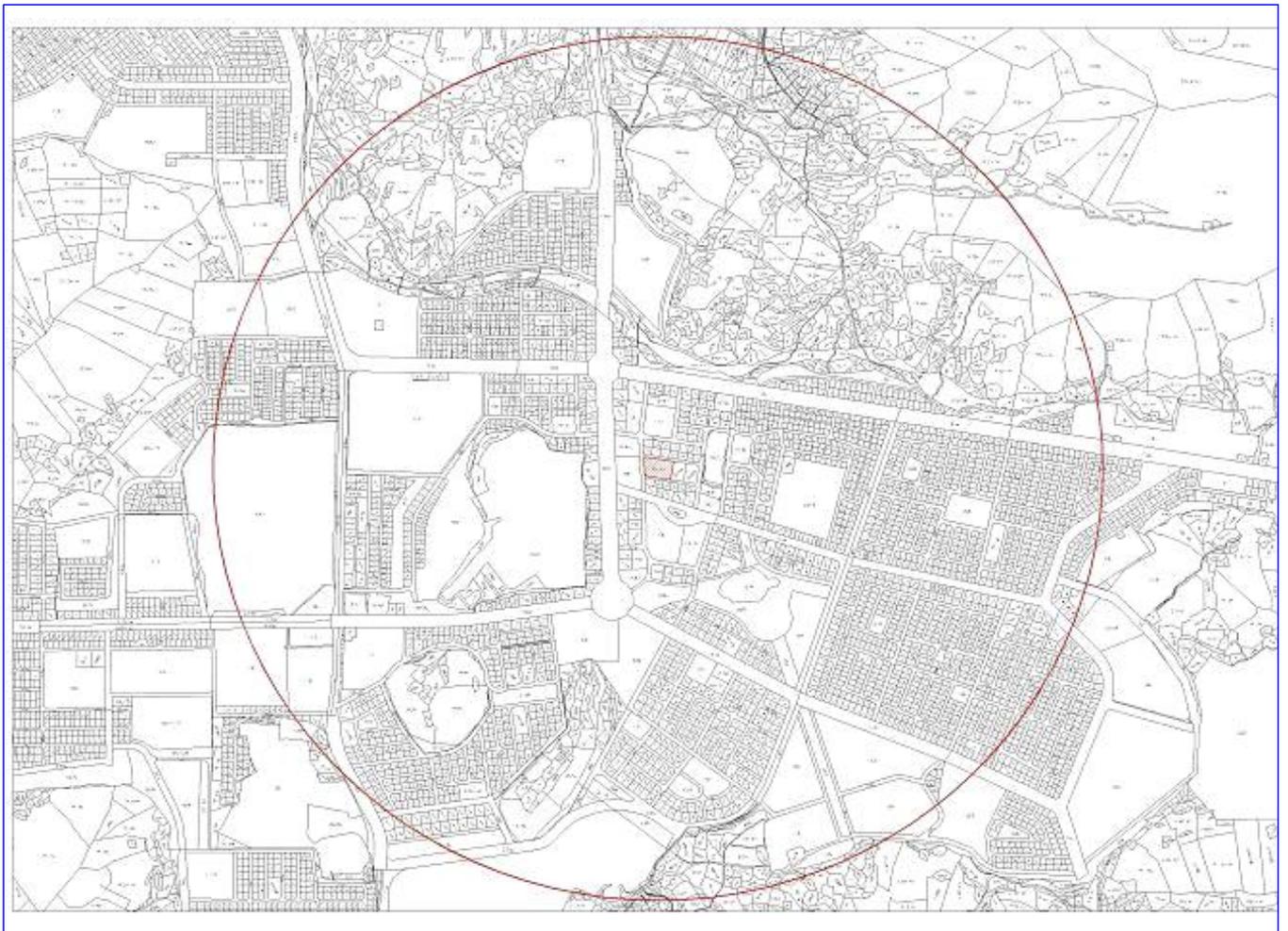
- 시장명 : (주)서시장
- 등록일자 : 1982. 7. 21.
- 위치 : 여수시 서교동 280번지
- 대지면적 : 3,354,295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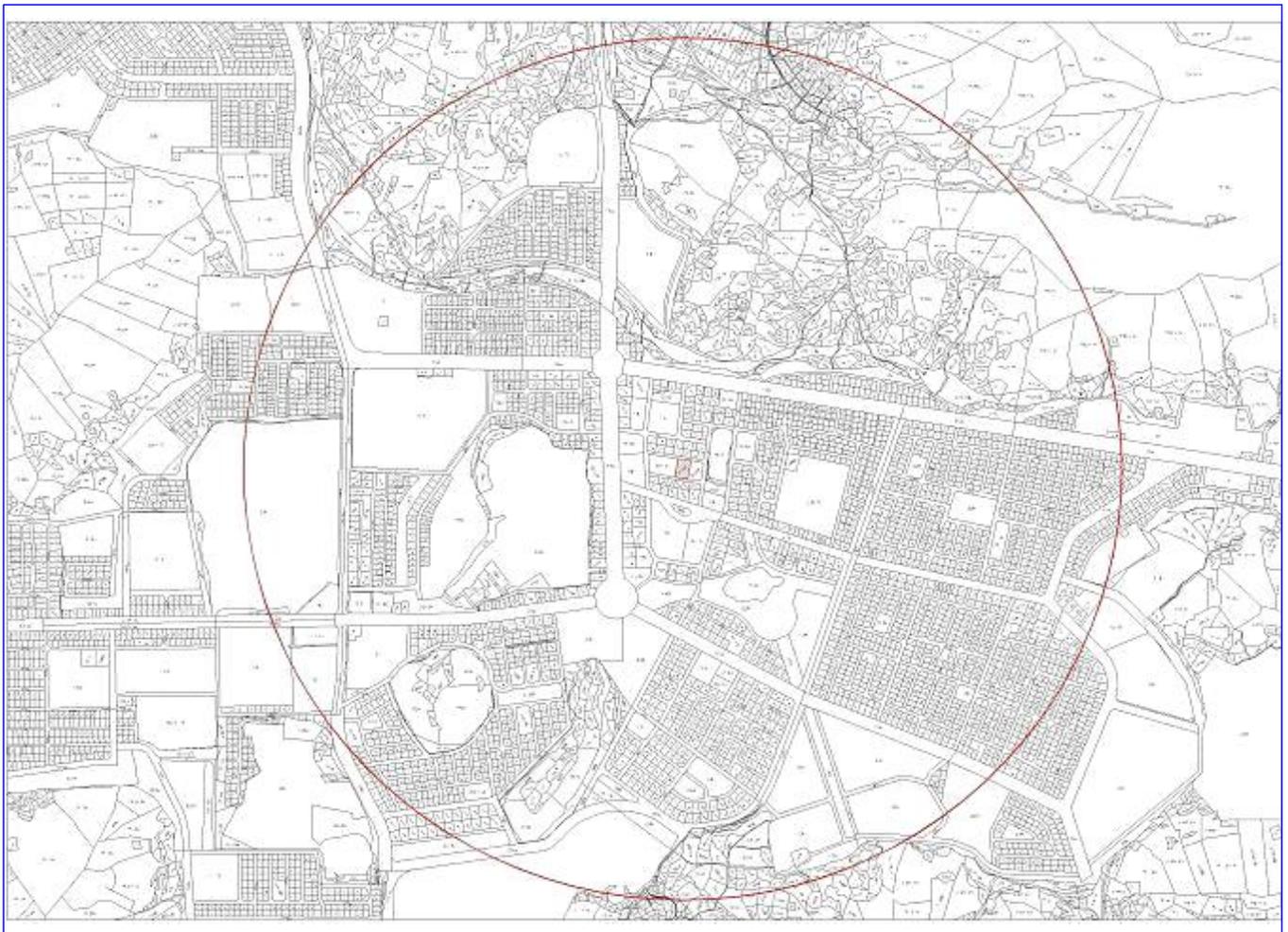
- 시장명 : 진남시장
- 등록일자 : 1984. 4. 2.
- 위치 : 여수시 학동 35-1번지
- 대지면적 : 3,400,655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제일시장
- 등록일자 : 1986. 5. 27
- 위치 : 여수시 학동 35-2번지
- 대지면적 : 3,314,306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 등록일자 : 2010. 5. 26.
- 위치 : 여수시 남산동 4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556,223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함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서시장주변시장
- 등록일자 : 2005. 6. 30.
- 위치 : 여수시 서교동 534-2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060,844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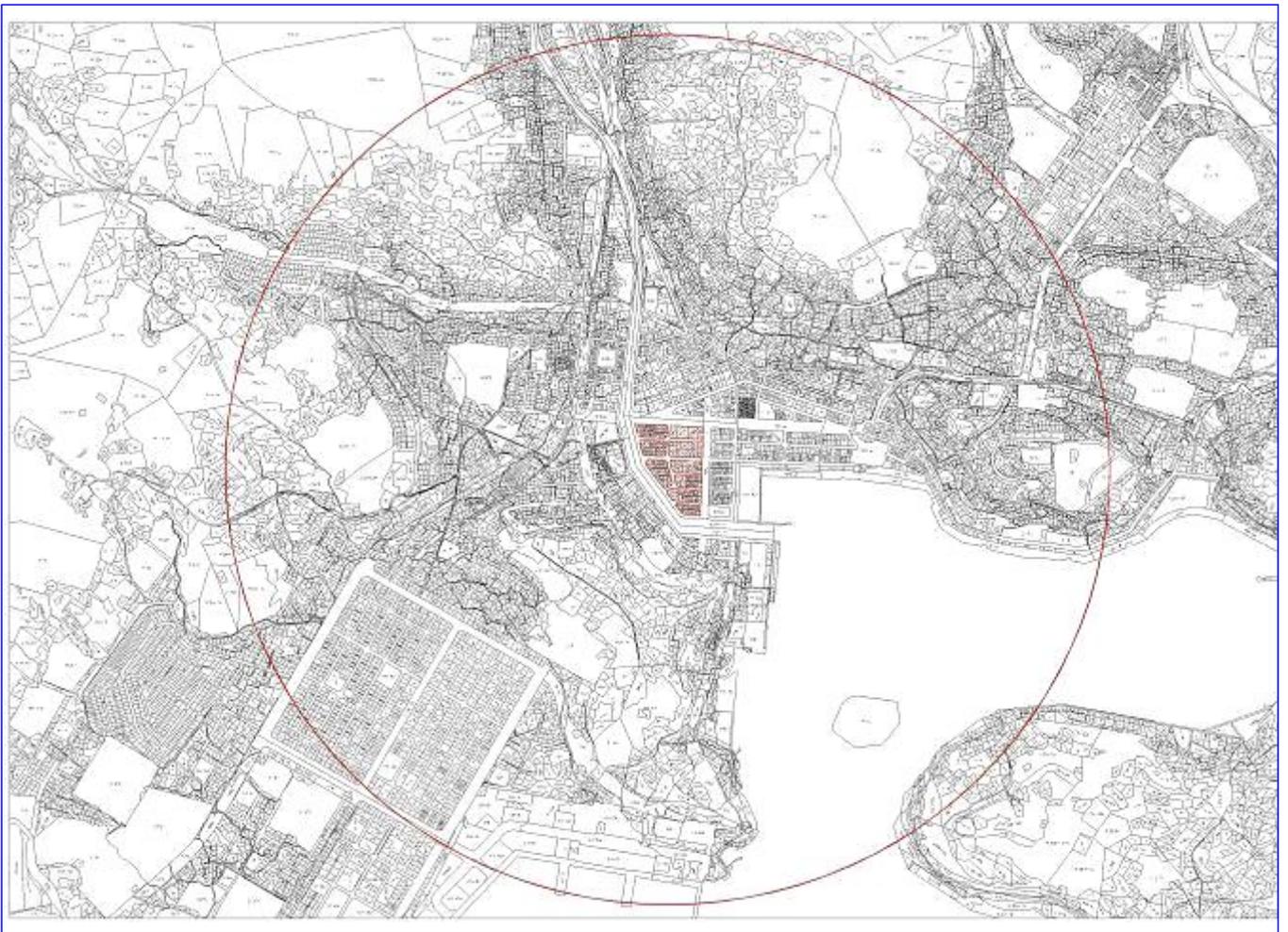
- 시장명 : 중앙선어시장
- 등록일자 : 2008. 4. 24.
- 위치 : 여수시 중앙동 385-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534,966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교동시장
- 등록일자 : 2005. 8. 3.
- 위치 : 여수시 교동 605-44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135,380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함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해안로건어물상가시장
- 등록일자 : 2011. 1. 3.
- 위치 : 여수시 교동 48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849,873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함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여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명 : 도깨비시장
- 등록일자 : 2010.11. 2.
- 위치 : 여수시 학동 58-7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547,089 m^2
- 지정목적 :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함
- 전통시장 위치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공 고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0. .

여 수 시 장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주차요금 등(안 제6조 제2항 개정)

- 우수·모범납세자 지원내용 중 우리시 우수납세자 및 국세청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는 바, 개정을 통하여 도 모범납세자가 우리시의 재정 기여도가 큰 점을 감안 동일 혜택 부여

○ 주차요금 등 (안 제6조 제7항 신설)

- 월 통합 정기주차권(소형 기준) 이용자는 월 150,000원의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한달동안 여수시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요금 등 (안 제6조 제8항 신설)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부 및 세자녀 이상 가구중 셋째자녀가 신청일 기준 만 10세이하 해당자녀가 있을 경우 대표차량 1대를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기간종료시 재신청)

-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안 제12조, 별표 5)
 -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표지판 규격 및 바닥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를 장애인 전용표지판 규격 등에 맞게 개정
 - ⇒ 가로규격 50cm→70cm, 바닥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 1.5m이상

-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안 제13조, 별표6, 별표7)
 - 2017. 7. 7.자 조례개정에 따른 별표 6, 별표 7의 제목란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을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으로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을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으로 정정하고 “표” 안의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의 시간요금이 월별로 상이한 바 시간 삭제

-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6조 제3항 및 안 제21조 제2항, 별표 9)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안내 표지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주차편의 제공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7조 제2항 신설)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이란 내용을 신설하여 건축행위허가시 혼선 예방
 - ※ 관리지역 범위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7조 제3항 신설)
 - 건축행위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근거를 마련 기계식주차장치를 최소 규모로 설치토록 하기 위함
 - ☞ 설치 가능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 법적설치 인정대수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

2. 개정조례안 : 별첨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1. ~ 10. 31.(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고 : 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41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교통과장)
- 다. 전화번호 : 061)659-4149, 팩스 061)659-583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안)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를 “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및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 ⑦ 월 통합 정기주차권(소형기준) 이용자는 한달 동안 여수시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월 통합 정기주차권은 150,000원으로 하며 대형은 제외한다.
- ⑧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부 및 세자녀 이상 가구중 셋째자녀가 신청일 기준 만 10세이하 해당자녀가 있을 경우 대표차량 1대를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하며,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이용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로 한다.

제17조 본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11과 같다.

- ② 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별표 10을 따르되 그 밖의 시설물은 영 제6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방식일 때에는「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

제21조 제2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로 한다.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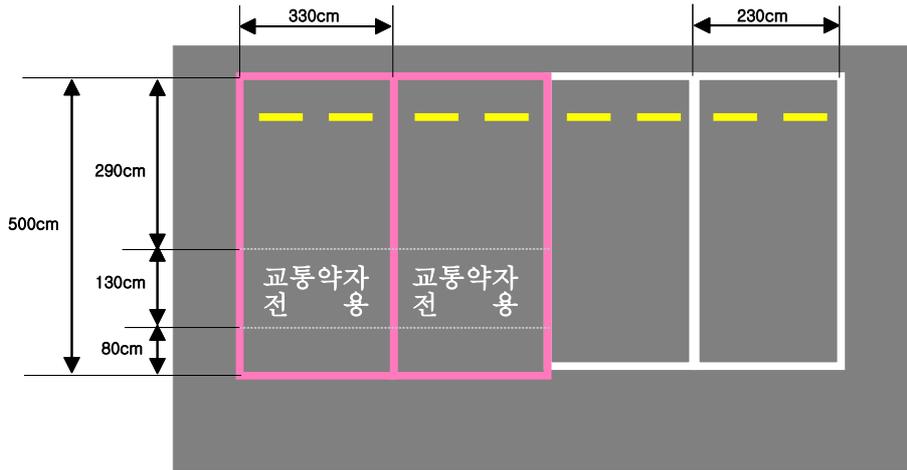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 호)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의 신설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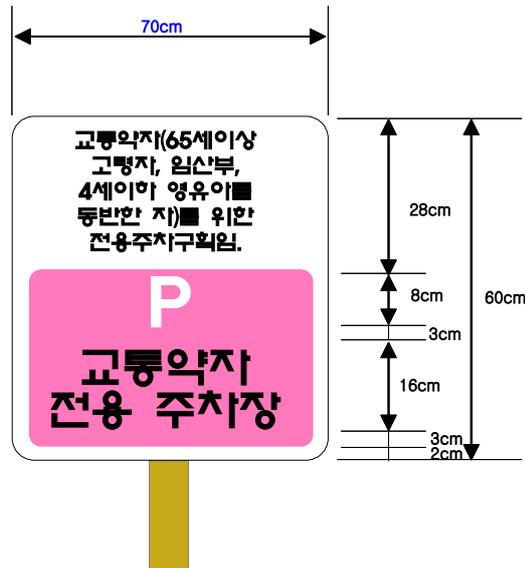
[별표 5]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규격과 내용(제12조 관련)

1.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2.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표지판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분홍색)
문자 및 기호(흰색, 검정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전방에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규 격 : 가로 0.7m×세로 0.6m, 바닥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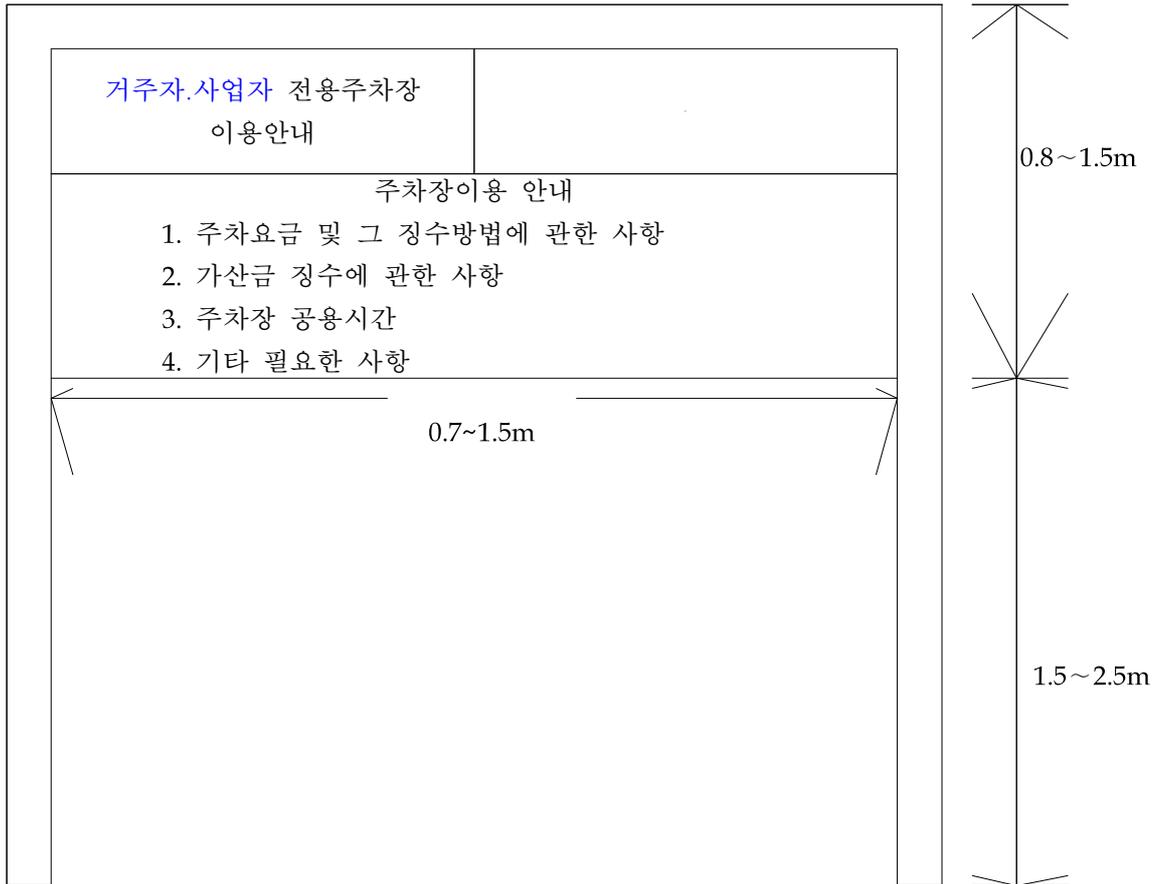
[별표 6]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거 주 자	30,000/월	20,000/월	10,000/월
사업자 및 상근자	50,000/월	30,000/월	20,000/월

[별표 7]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제13조제4항 관련)



구분	재료	색채		
		바탕	테두리	글씨(고딕)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아크릴, 알미늄	청색	백색	흰색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 (제16조제3항 및 제21조 제2항 관련)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및 유도표지】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 차량 진·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좌·우측 또는 상·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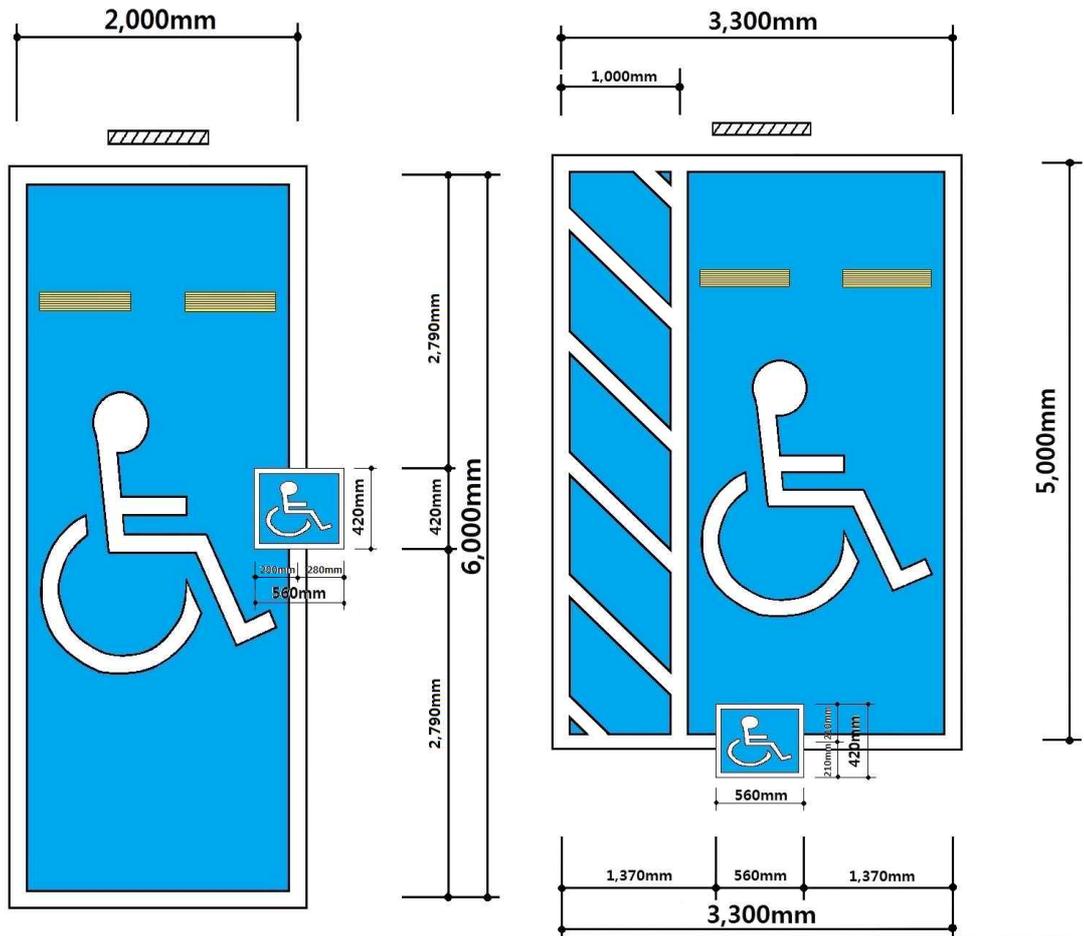
① 평행형식 - 폭2m×길이6m 이상

② 직각형식 - 폭3.3m×길이5m 이상

-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가로0.56m × 세로0.42m

① 평행형식

② 직각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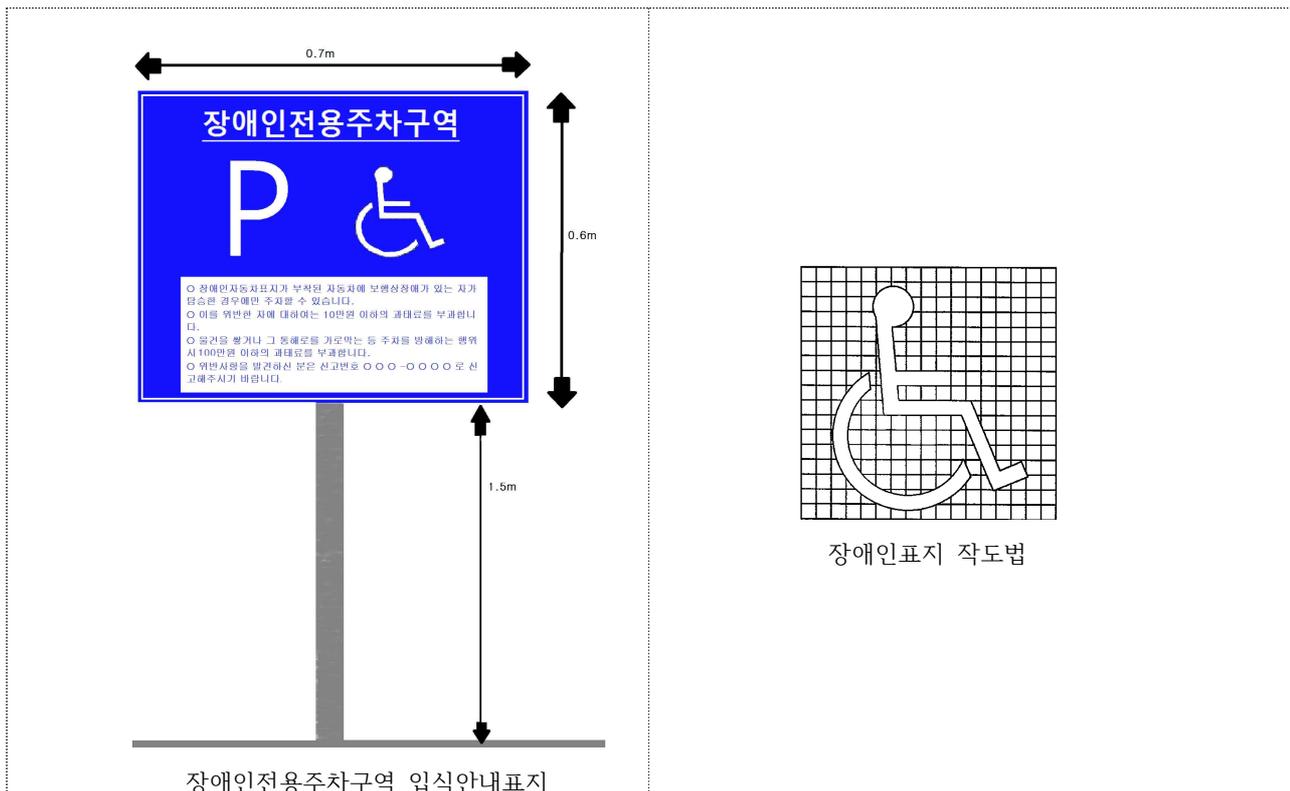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0.7m×세로0.6m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설치하되, 각 면과 모서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과 형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61-659-3726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표지의 크기는 가로0.7m×세로0.6m이상으로 설치하며, 유도표지의 설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법적설치 인정대수

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별표 10 및 영 제6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용도별 법정 주차대수의 가목의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때에는 1대로 본다)

다. 기계식 2단식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주차시설 기기 당 1대로 인정한다.

3. 적용 예외

「주차장법」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 ② (생략)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지는 별표 9에 따른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생략)

<신 설>

<신 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생략)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지는 별표 9에 따른다.

한다.

제16조(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별표 10을 따르되 그 밖의 시설물은 영 제6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방식일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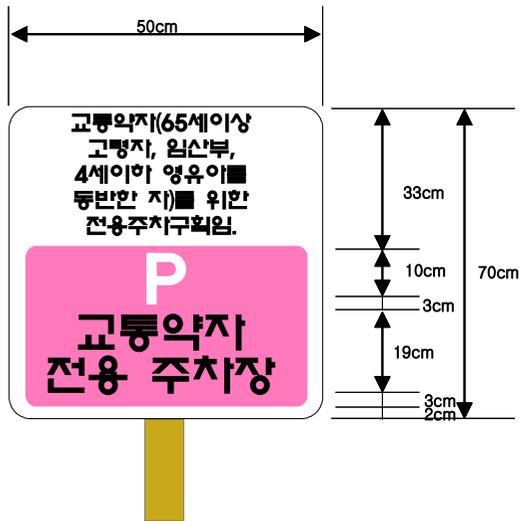
제21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

현 행

[별표 5]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규격과 내용(제12조 관련)

1. (생략)
2.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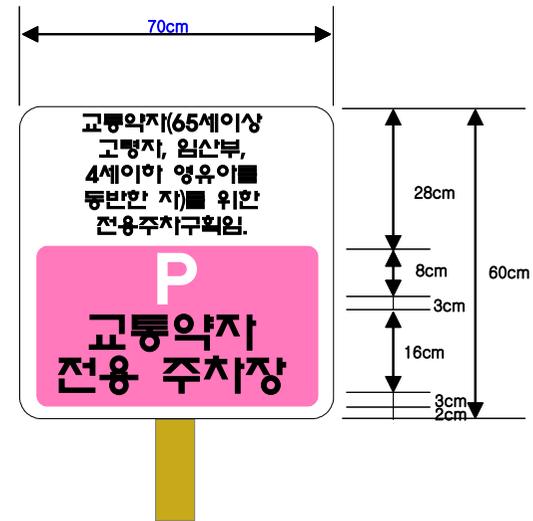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분홍색)
문자 및 기호(흰색, 검정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전방에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개 정 안

[별표 5]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규격과 내용(제12조 관련)

1. (생략)
2.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표지판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분홍색)
문자 및 기호(흰색, 검정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전방에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규 격 : 가로 0.7m×세로 0.6m, 바닥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한다.

[별표 6]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주차요금(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전일제 00:00~24:00)	주간제 (08:00~20:00)	야간제 (20:00~08:00)
거 주 자	30,000/월	20,000/월	10,000/월
사업자 및 상근자	50,000/월	30,000/월	20,000/월

[별표 7]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제13조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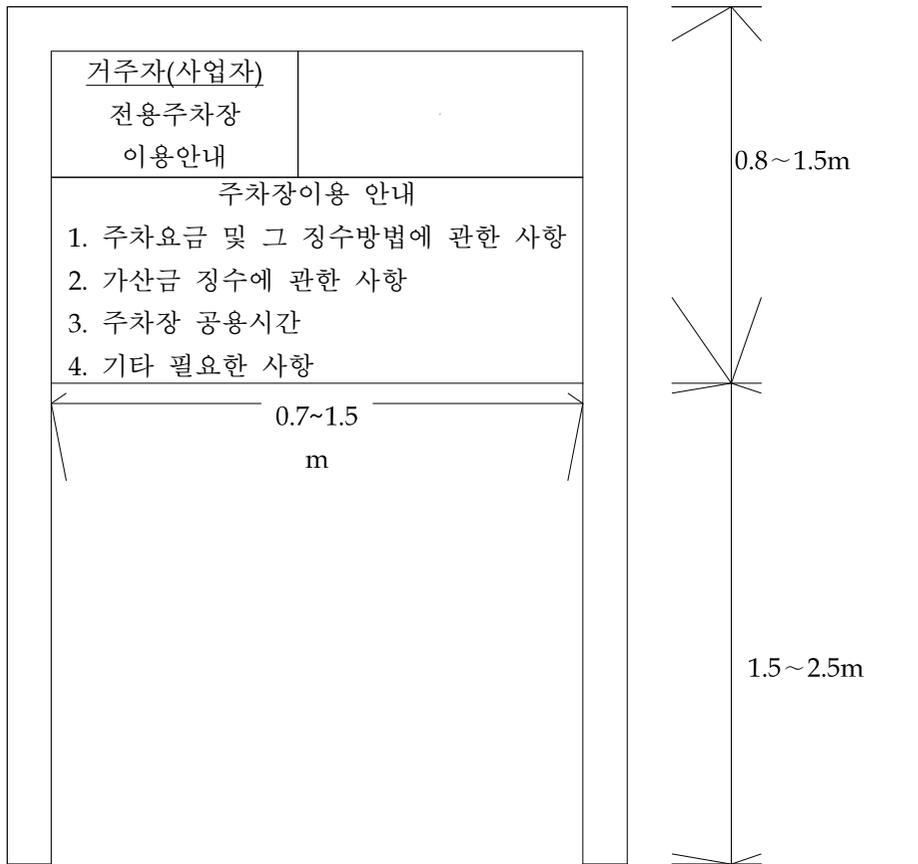
[별표 6]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주차요금(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거 주 자	30,000/월	20,000/월	10,000/월
사업자 및 상근자	50,000/월	30,000/월	20,00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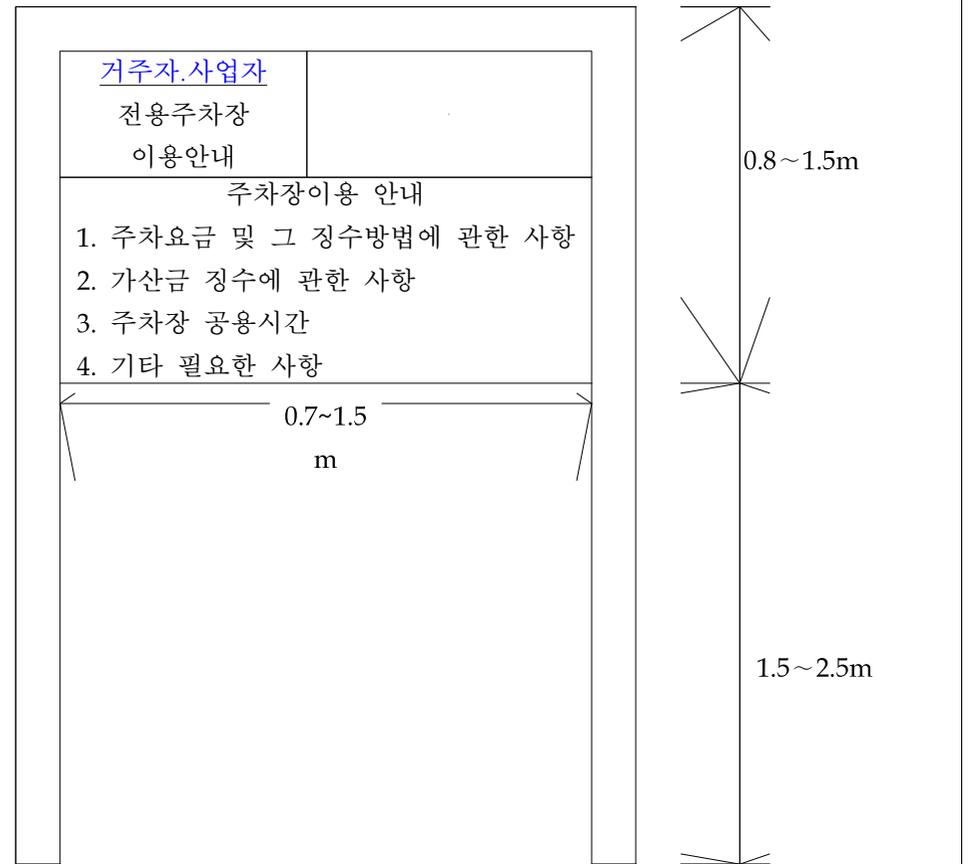
[별표 7]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제13조제4항 관련)



구분	재료	색채		
		바탕	테두리	글씨(고딕)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아크릴, 알미늄	청색	백색	흰색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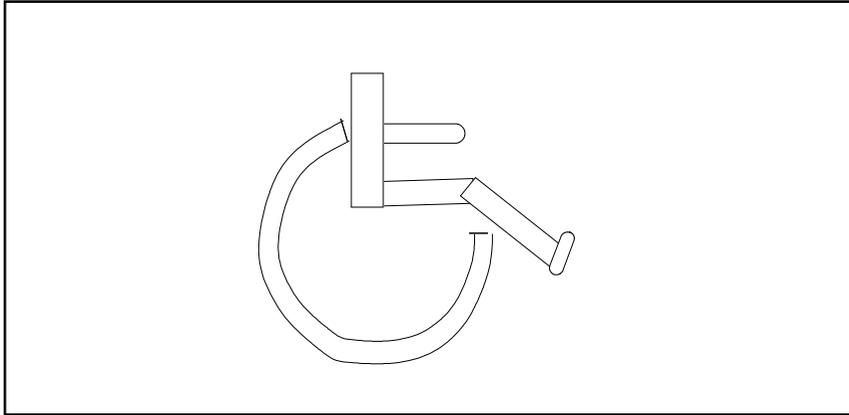


구분	재료	색채		
		바탕	테두리	글씨(고딕)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아크릴, 알미늄	청색	백색	흰색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제16조제2항 및 제21조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 (제16조제3항 및 제21조 제2항 관련)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및 유도표지】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 차량 진·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좌·우측 또는 상·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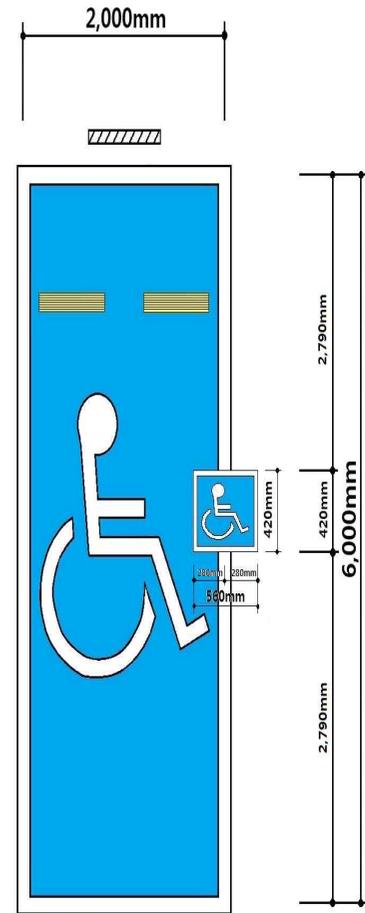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의 규격

① 평행형식 - 폭2m×길이6m 이상

② 직각형식 - 폭3.3m×길이5m 이상

-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가로0.56m×세로0.42m

① 평행형식



② 직각형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0.7m×세로 0.6m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설치하도, 각 면과 모서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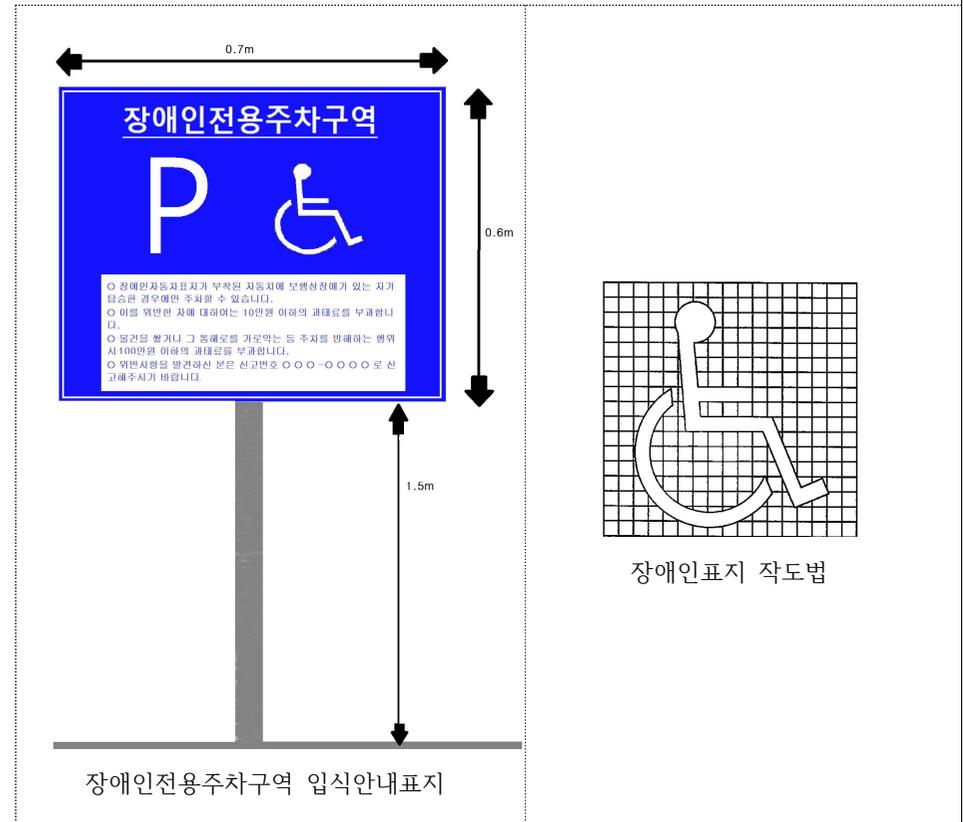
2.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과 형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표지의 크기는 가로0.7m×세로0.6m이상으로 설치하며, 유도표지의 설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별표 12]

<신 설>

[별표 12]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법적설치 인정대수

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별표 10 및 영 제6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용도별 법정 주차대수의 가목의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때에는 1대로 본다)

다. 기계식 2단식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주차시설 기기 당 1대로 인정한다.

3. 적용 예외

「주차장법」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붙임 3】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 정 1998. 4. 4 조례 제 83호
개 정 2000. 1. 8 조례 제261호
(일부개정) 2005.03.17 조례 제 476호
(일부개정) 2008.05.20 조례 제 660호
(일부개정) 2010.11.22 조례 제 778호
(일부개정) 2011.12.31 조례 제 841호
(일부개정) 2011.12.31 조례 제 841호
(일부개정) 2011.12.31 조례 제 849호
(일부개정) 2012.06.29 조례 제882호
(일부개정) 2015.03.20 조례 제1074호
(전부개정) 2016.06.08 조례 제1199호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12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방법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 설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주거지역과 1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구역에 포함한다. 다만,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내 집단취락지역 등은 조사구역에서 제외한다.
2.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3. 주차수요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야간 시간대별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시는 시민이 자기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증액 또는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할 수 있다.

②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시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자동차 및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5.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60퍼센트
6. 10부제 운행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3인 이상)에 참여 중인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퍼센트
7.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8.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발급받은 장기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⑤ <삭제 2017. 7. 7.>

⑥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주차요금표를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월 통합 정기주차권(소형기준) 이용자는 한달 동안 여수시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월 통합 정기주차권은 150,000원으로 하며 대형은 제외한다.

⑧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부 및 세자녀 이상 가구중 셋째자녀가 신청일 기준 만 10세이하 해당자녀가 있을 경우 대표차량 1대를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하며,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이용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 안에서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 안에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안에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한 달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의 주소·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표지 등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기준) ·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정기주차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별표 1의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용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이 정기주차권 요금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환불
2.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정기주차권 요금에서 해당 월 미사용 일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에 별표 11의 규격과 내용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4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목개정 2017. 7. 7.]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차고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자동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및 2.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7.>

1.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주민의 자동차 <개정 2017. 7. 7.>
2.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개정 2017. 7. 7.>

③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6과 같으며, 해당 요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주차권의 환불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7.>

④ 시장은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별표 7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자동차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7. 7.>

⑤ 인근 주민·사업자·상근자의 구체적 범위, 거주자·사업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및 선정 절차, 그 밖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제14조(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3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운영구역
3. 운영시간
4. 이용가능한 자동차
5.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의 하역주차구획에는 20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제15조(주차방법 등) ①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에 따르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4조제8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별표 10을 따르되, 그 밖의 시설물은 영 제6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방식일 때에는「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19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주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양식은 별표 12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해당 급지에 따른 소형 자동차의 주·야간 월 정기주차요금(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 해당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6월 이내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에 의하되, 당해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의 시설물 부지(이하 “시설물 부지”라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은 최근 6월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건축물부지의 면적(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제22조(보조의 대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기존의 건축물 중 담장 또는 대문을 개조·철거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단, 1면의 주차공간이 2.3m×5.0m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단,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수용능력이 평면식 주차장의 3배이상으로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보조의 방법)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용도 제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 : 5년
2.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 5년
3.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건축물 : 20년

제25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제24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 완료 후 주차장에 임의로 시설물(대문,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후 20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특약등기가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6. 8. 조례 제1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허가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대상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22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부칙(2017. 7. 7.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별표 10의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
4.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부칙(2017. . .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 호)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의 신설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모집 공고

- 2017년 가을철 · 2018년 봄철 -

산불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모집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여 수 시 장

1. 모집(예정)인원 : 총95명 (진화대 20, 초소·취약지 감시원 75)

가. 진화대 : 20명 ⇒ 산림과 배치

나. 감시원 : 75명 ⇒ 읍·면·동 배치

2. 신청서 접수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7.10.16. ~ 2017.10.27.(12일간)

나. 접수 및 선발

• 산불진화대 : 산림과

- 체력검정 실시 : 진화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 검증 실시

• 산불감시원 : 해당 읍·면·동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방 문 : 평일(09:00~18:00)에만 가능

• 우 편 :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선발자 확정 : 2017.11.3.한(해당자에 유선통보)

3. 선발(배점)기준

•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관내 지리에 밝고 기동성이 좋은 지역 거주자

• 리·통장은 선발 제외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며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자로 체력이 강한 자

• 아래해당자 우대

· 예초기 및 기계톱 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산림사업 유경험자

· 차량 등 기동장비를 소유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임업기능인 교육(6주 이상)이수자

·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 후 소집 해제된 자

※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은 주업무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으로 질병 및 신체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자

4. 사업추진 내용

가. 배치기간

- 2017년 가을철 : 2017.11. 6. ~ 2017.12.31.

- 2018년 봄 철 : 2018. 1. 1. ~ 2018. 4.30.

※ 예산 및 기상여건 등 사업추진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배치장소 : 여수시 일원

다. 주요임무

- 산림 및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감시 및 진화작업
- 기타 산림내 불법행위 감시 및 입산자 화기물 휴대 금지 홍보실시
- 산불예방홍보 및 진화작업 실시 등
- 산림내 및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감시
- 산불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작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등 기타 산림사업 지원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1일 8시간, 주 5일(월~일중 2일 휴무)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 55,000원
(부대경비 포함)

나. 사회보험 가입(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다. 근무시간 :09:00 ~ 18:00

※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6. 제출서류

가. 신청 시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나. 선발시 제출서류(선발 확정자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신체검사서 1부

7.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림과(☎ 659-4619),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 산불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신청서 및 배치계획 각 1부.

(별지1)

■ 접수번호 : 2017-

산불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신청서			
성 명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주민등록번호 나 이	(만 세)	주 소	
기동장비 보유여부	차량 2륜차 (등록증사본첨부)		
주요이력 (교육사항 포함)	진화교육이수여부 : (이수. 미이수)		
	진화대 경력 (기간: 부터 까지)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근무여부 : (근무. 미근무) ※ 근무기간 : ~ 까지		
	산림사업 경험여부 : (유. 무)		
기 타 (참고사항)	체력검사 : 체력검사는 별도로시행		
비 고	해당란에 ○표,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미첨부시 경력사항 인정 안함.		

위와 같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② 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 목적	
④ 제공 항목	
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⑥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17 . . .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 ①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기재합니다.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명칭을 기재합니다.
- ③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기재합니다.
-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 ⑥ 고유 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시 별도 동의를 기재합니다.

(별지2)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감시원(초소, 취약지) 배치계획

구분	배치계획(명)			초소명	산불취약지 등 관리지역 (구역지정-읍면동장책임하)	비고
	계	시청 진화대	읍면동 초소 취약지 감시원			
계	95	20	11	64	총:14개소 근무:11개소	
산림과	20	20				
돌산	8		2	6	봉수, 성두	- 우두리 - 신복리 신기 - 성도 - 평사 노실 - 덕곡~송시 - 대울
소라	7		1	6	현천	- 현천리 마류 가사리, 복산 - 관기리 안심산, - 덕양리 - 죽림 - 봉두
율촌	6		1	5	수암	- 취절, - 북절 - 반월, - 신곡
화양	8		2	6	비봉, 봉화	- 용주리 - 소장 - 옥적 - 이목 - 장수리 자매 - 세포리 - 하동
남	3			3		- 유송리 여천 - 금오도, - 안도
화정	3			3		- 개도 - 봉화산 - 낭도
삼산	3			3		- 거문도 - 초도 - 손죽도
동문	1			1	자산(근무제외)	- 동문동일원(종고산, 공고~만덕동 경계)
총무	1			1		- 총무동일원(종고산, 공고~구.화장장)
광림	1			1		- 오림동 일원
서강	1			1		- 서강동일원(진성정보고 뒤)
대교	1			1		- 대교동일원 (구봉-따부산~한산사 주변)
국	1			1	구봉(여서동일원)	- 국동 일원, 구봉산
월호	1			1		- 대경도 - 구봉산 (신월 금호A.뒤)
여서	3		1	2	장군 구봉(필요시)	- 여서동일원(장군산, 대치마을)
문수	2			2		- 문수동일원(주공A 뒤, 문수동 주택단지)
미평	2		1	1	호암	- 미평동일원
둔덕	2			2		- 둔덕동일원(호랑산, 수문산, 고락산)
만덕	4		1	3	마래	- 중앙여고 뒤 - 만흥동 평촌~상촌 - 오천배수지 - 마래산 일대
쌍봉	2			2	안심(근무제외)	- 안심새(안사 소호) - 학용동 뒤 철도변
시전	2			2		- 신기 주공A 뒤 - 망마산~대인산
여천	3		1	2	무선	- 무선산 (총후탑 주변) - 화장동 철도변~ 화장주공@
주삼	3		1	2	전봉	- 해산 국도변 - 전봉산
삼일	5			5		- 잔양, - 중흥 - 호명 - 진례 - 월래 - 영취산, 진례산
묘도	2			2		- 묘도동일원

공 고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1.

여 수 시 장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일반 참전유공자(전·공상군경 제외)에 대하여 '12. 12. 31. 조례 일부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5년간 지원금액 변동없이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참전유공자들의 건의와 인상요구가 빈번함.
- 일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중 전·공상군경을 제외한 일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인상(안 제4조 제1호)

- 기존 : 월 70천원 → 변경 : 월 100천원(30천원 인상)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17. 10. 11. ~ '17. 10. 31.(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 [참조 : 사회복지과, 여수시 시청로 1 (학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 061-659-3658, FAX : 061-659-5820, e-mail : chh273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조(지원사업)

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0천원 지급. 다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월 50천원 지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70천원 지급. 다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월 50천원 지급</p> <p>2 ~3.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 ----- ----- -----.</p> <p>1. ----- <u>월 100천원</u> 지급. ----- ----- ----- -----</p> <p>2 ~3. (현행과 같음)</p>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0. 11.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위치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보람실업 (주)	화양면 용주리 1358-1번지	위반건축물 (공장 외/ 불법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여수시 화양면 영터길 35-**	수취거절
2	황미숙	웅천동 1643번지	위반건축물 (소매점 외/ 불법증축)	"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3**동 13**호 (웅천동, 신영웅천지웰3차)	폐문부재
3	황정수	웅천동 1643번지	위반건축물 (소매점 외/ 불법증축)	"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30*동 19**호 (웅천동, 신영웅천지웰3차)	폐문부재
4	박성환	수정동 332-54번지	위반건축물 (창고/불법증축)	"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1*-*(종화동)	폐문부재
5	보람실업(주)	화양면 용주리 1358-1번지	위반건축물 (공장 외/ 불법증축)	"	여수시 화양면 영터길 35-**	수취거절
6	이선애	돌산읍 우두리 1083-11번지	위반건축물 (주택/용도변경)	"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17-**	폐문부재
7	박향남	증무동 540번지	위반건축물 (점포/용도변경)	"	여수시 여문2로 54-26, 1**동 60*호 (문수동, 문수코아루수아파트)	폐문부재
8	이봉현	돌산읍 평사리 1405-12 외1필지	위반건축물 (창고/불법증축)	"	여수시 무선로 50, 10*동 20**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폐문부재
9	이선호	돌산읍 평사리 1292-73번지	위반건축물 (관리실/불법증축)	"	여수시 여문2로 54-26, 105동 7**호 (문수동, 문수코아루수아파트)	폐문부재
10	문영준	봉계동 483-6번지	위반건축물 (사무실외/ 불법신·증축)	"	여수시 반월1길 * (선원동)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80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0. 11.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위치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이진숙	소라면 봉두리 1138번지	위반건축물 (주택/ 불법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 1*동 4**호 (우아동3가, 우아1단지아파트)	폐문부재
2	박동포	소라면 봉두리 1110-6번지	위반건축물 (창고/ 불법증축)	"	여수시 소라면 갯실길 2*-*	폐문부재
3	이창규	소라면 봉두리 1145번지	위반건축물 (주택 / 불법증축)	"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 (평내동, 평내마을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주소불명
4	임길용	소라면 봉두리 1110-2번지	위반건축물 (창고/ 불법증축)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10길 **-1 (금호동3가)	기타
5	김선자	소라면 봉두리 1110-2번지	위반건축물 (창고외/ 불법증축)	"	여수시 소라면 운암길 1**	폐문부재
6	김성곤	소라면 봉두리 1110-2번지	위반건축물 (창고/ 불법증축)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1*4-***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0. 11.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위치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배위진	학동 39-15번지	위반건축물 (숙박시설/ 간판구조물설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여수시 학동2길 ** (학동)	주소불명

4.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0. 11.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2.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이승현	이행강제금 체납 (점포/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여수시 여서로 304, 10*동 2**호 (여서동, 경남1차아파트)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조치됨을 알려 드리니,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